

충주시의회 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의 안 번 호	
------------	--

제안년월일 : 1996. 11.

제 안 자 :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안이유

-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 사안의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제1조(목적)을 규정함.
- 제2조(위촉및해촉)에 법률고문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제3조(직무)에 법률고문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제4조(보수)에 고문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함.

충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법률 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①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법률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 의사표시를 의회에 통보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한 경우

3. 운영상 부득이 하거나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 도과

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라.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무성의한 법률고문

4.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3조 (직무) ①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사안을 처리한다.

1. 의회에서 처리하는 조례안·규칙안 및 청원등 의안과 관련되는 법률사안의 자문

2. 의장이 위임한 재송사건의 수행

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률자문

②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충주시의회 의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송사건은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을 할 수 없다.

제4조 (보수) ①고문 변호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을 준용하여 소송물가액등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